**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정당 및 후보자님께 드리는**

**동물복지 정책 제안 및 질의서**

**-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김해똥강아지공화국, 나주천사의집, 김해유기동물협회(더공존),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독수리하우스아이들, 돌프와친구들, 동물권단체케어, 동물권SNS,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모임(동지모),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에게자비를, 롯데캐슬냥이들,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보호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사단법인고유거,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성남캣맘활동가, 쉬어가개냥, 스토미드림Co,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애니멀파라다이스,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엔젤독스밴드, 예술행동그룹SKAVANTGARD(스카방가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전국동물지킴이, 캣치독, 1500만반려인연대, 포항동물사랑,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가나다순)**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정당 및 후보자님께 드립니다.

이번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과 같이 동물복지 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약 1,500만명의 반려동물 인구가 있고, 4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동물보호 의식이나 법률, 제도 등은 매우 미흡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동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끔찍한 동물학대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절반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및 폐사되고, 길고양이들은 유해동물로 취급받아 하루 하루 길바닥에서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약 1만개의 개농장이 있고, 매년 1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이 개식용의 단계적 폐기를 정책 공약으로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농장동물들은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이라는 끔찍한 동물학대 환경 하에서, 생명이 아닌 상품이나 기계로 전락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가축전염병으로 1억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 돼지들이 살처분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산채로 끔찍하게 생매장(生埋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는 380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2/3이상이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극심한 고통의 고통 D등급과 고통 E등급의 동물실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실험 천국으로 전락했지만,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대책마련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옛부터 내려온 “모든 동물이나 생명체는 모두 귀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이 있으며, 이는 인류의 기본 정신으로 아이들과 후대에 계승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이 바쁘실 줄 알지만, 아래의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물복지 정책 제안 주요내용=> 질의 내용=> 정책 제안 상세 설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답변은 이메일 주소 LWB22028@daum.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하여, 많은 유권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4가지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과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정책 질의서 답변 회신**

**② 면담 및 간담회**

**③ 동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가칭) 구성**

**④ 동물복지와 관련 신설 및 추가 정책 공약 발표**

**-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김해똥강아지공화국, 나주천사의집, 김해유기동물협회(더공존),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독수리하우스아이들, 돌프와친구들, 동물권단체케어, 동물권SNS, 동물당,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에게자비를, 롯데캐슬냥이들,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보호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사단법인고유거,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성남캣맘활동가, 쉬어가개냥, 스토미드림Co,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애니멀파라다이스,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엔젤독스밴드, 예술행동그룹SKAVANTGARD(스카방가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전국동물지킴이, 캣치독, 1500만반려인연대, 포항동물사랑,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가나다순)**

(주소: 서울 마포구 고산 16길 49-4, 302호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전화번호: 010-3324-6477 이메일주소: LWB22028@daum.net)

**++++++++++++++++++++++++++++++++++++**

**[동물복지 정책 제안 주요 내용]**

**5개분야 37개 항목/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  |
| --- |
| **1. 반려동물 분야** |
| ■ 동물 '임의도살' 금지(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
| ■ '음식물 쓰레기'를 개농장 먹이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
|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 |
| ■ 고양이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한 등록제 '의무화' |
| ■ '펫샵' 등 강아지 판매 금지 및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 입양 가능하도록 함  |
| ■ '피학대' 동물 몰수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사육 제한 |
| ■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 길고양이, 유기견의 이주, 보호 대책 마련 |
| ■ 119 등과 연계한 응급, 위급한 동물구조 시스템 구축 |
| **2. 농장동물 분야** |
| ■ 산란계(産卵鷄) 배터리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기 |
| ■ 거세(去勢), 꼬리 자르기 등 농장동물 신체절단 및 훼손 등의 단계적 금지 |
| ■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 산채로 분쇄 금지 등 '도태' 동물의 인도적 처리 |
|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실시 및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및 우선 구매제 실시 |
| ■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생매장'(生埋葬) 살처분 방지 대책 및 예방백신의 활용 |
| ■ 인도적인 동물 '운송' 대책 마련 |
| ■ 도축장 내 CCTV 설치 등 인도적인 '도축' 대책 마련 |
| ■ 말(馬) 산업에 대한 동물 복지 추진 |
| ■ 비거니즘(Veganism) 채식 문화의 확산(주1회 채식급식, 채식선택권 등의 보장) |
| **3. 실험동물 분야** |
| ■ 실험동물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체시험법'의 확대 실시 등 |
| ■ 동물실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물실험법의 '선진화' |
| ■ 담배, 알콜 등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금지 |
| ■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의 고통 'E등급' 동물실험의 개선 및 대체 |
| ■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함 |
|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예외조항 삭제 |
| **4. 야생동물 분야** |
| ■ '로드킬'(Road Kill), 조류의 '윈도우킬'(Window Kill) 방지 대책 마련 |
| ■ 쓸개즙 채취를 위해 곰 농장 케이지에 갇혀있는 '사육 곰' 대책 마련 |
| ■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 및 영업자외 개인 판매 금지 |
| ■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유사' 동물원의 폐기 |
| ■ 잔인한 동물학대 방식으로 생산된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
| ■ 고래류 포획, 혼획, 고래고기 유통 및 사육, 공연 금지 |
| ■ '산천어 축제' 등 동물 학대 살상 축제의 폐지 |
| ■ 산 낙지, 산 문어 등 살아있는 동물의 조리 및 식용의 금지 |
| **5. 일반종합 분야** |
| ■ 동물학대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
| ■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정의에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연체동물, 두족류, 갑각류를 포함함  |
| ■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 증강 및 '동물보호과' 등 전담 부서 설치 |
| ■ 초, 중, 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예방 교육 실시 |
| ■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 및 '동물권' 명시 |
| ■ 민법에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장 |
| ■ 산불 등 '재난' 동물 구조 가이드라인 신설 및 시스템 구축 |
| ■ 푸아그라, 샥스핀 등 잔인한 동물학대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의 수입, 판매 제한 |

**++++++++++++++++++++++++++++++++++++++++**

**[동물복지 정책 질의내용]**

**5개분야 37개 항목/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  |
| --- |
| **1. 반려동물 분야** |
| **■ 동물 '임의도살' 금지(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음식물 쓰레기'를 개농장 먹이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고양이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한 등록제 '의무화'**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펫샵' 등 강아지 판매 금지 및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 입양 가능하도록 함**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피학대' 동물 몰수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사육 제한**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 길고양이, 유기견의 이주, 보호 대책 마련**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119 등과 연계한 응급, 위급한 동물구조 시스템 구축**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2. 농장동물 분야** |
| **■ 산란계(産卵鷄) 배터리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기**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거세(去勢), 꼬리 자르기 등 농장동물 신체절단 및 훼손 등의 단계적 금지**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 산채로 분쇄 금지 등 '도태' 동물의 인도적 처리**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실시 및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및 우선 구매제 실시**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생매장'(生埋葬) 살처분 방지 대책 및 예방백신의 활용**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인도적인 동물 '운송' 대책 마련**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도축장 내 CCTV 설치 등 인도적인 '도축' 대책 마련**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말(馬) 산업에 대한 동물 복지 추진**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비거니즘(Veganism) 채식 문화의 확산(주1회 채식급식, 채식선택권 등의 보장)**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3. 실험동물 분야** |
| **■ 실험동물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체시험법'의 확대 실시 등**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동물실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물실험법의 '선진화'**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담배, 알콜 등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금지**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의 고통 'E등급' 동물실험의 개선 및 대체**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함**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예외조항 삭제**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4. 야생동물 분야** |
| **■ '로드킬'(Road Kill), 조류의 '윈도우킬'(Window Kill) 방지 대책 마련**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쓸개즙 채취를 위해 곰 농장 케이지에 갇혀있는 '사육 곰' 대책 마련**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 및 영업자외 개인 판매 금지**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유사' 동물원의 폐기**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잔인한 동물학대 방식으로 생산된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고래류 포획, 혼획, 고래고기 유통 및 사육, 공연 금지**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산천어 축제' 등 동물 학대 살상 축제의 폐지**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산 낙지, 산 문어 등 살아있는 동물의 조리 및 식용의 금지**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5. 일반종합 분야** |
| **■ 동물학대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정의에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연체동물, 두족류, 갑각류를 포함함**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 증강 및 '동물보호과' 등 전담 부서 설치**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초, 중, 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예방 교육 실시**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 및 '동물권' 명시**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민법에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장**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산불 등 '재난' 동물 구조 가이드라인 신설 및 시스템 구축**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 푸아그라, 샥스핀 등 잔인한 동물학대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의 수입, 판매 제한** |
| ①모르겠다( ) | ②추진않겠다( ) | ③추진하겠다( ) | ④적극추진하겠다( ) |

**● 출마 지역:**

**● 소속 정당:**

**● 후보자 성명 및 서명:**

**2020년 월 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다음은 각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  |
| --- |
| **1. 반려동물 분야** |

|  |
| --- |
| **■ 동물 '임의도살' 금지(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
|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개, 고양이 식용 악습을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필요함.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도 개식용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였으며, 2018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개호 장관도 개식용은 국제적 기준과 추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음.동물 '임의' 도살금지(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함.  |

|  |
| --- |
| **■ '음식물 쓰레기'를 개농장 먹이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
|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혀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농장의 개들에게 먹이로 공급하며 개농장을 유지하고 있음. 음식물 쓰레기의 동물 급여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식품안전국(EFSA)에 의하면 남은 음식물 급여가 돼지열병 전파 원인의 3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에서도 2019년 7월부터 모든 돼지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했듯이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필요함.  |

|  |
| --- |
|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 |
|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서 21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을 올렸고, 같은 해 8월 9일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관련규정을 정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였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진전이나 성과가 없는 상태임.  |

|  |
| --- |
| ■ **고양이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한 등록제 '의무화'** |
|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로 신고되는 고양이 숫자가 전체 유기동물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이 등록제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함. 고양이는 발정이 나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양이 등록제는 개 등록제 못지않게 중요함.또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TNR 사업을 실시하면서 포획된 고양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반환율을 높일 수 있음. 현재는 고양이 등록제가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 |
| **■ 펫샵 등 강아지 판매 금지 및 유기동물이나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 입양 가능하도록 함** |
| 우리 사회는 무책임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구매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동물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12만, 2019년 13만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함.독일 등에서는 펫샵에서 강아지 용품이나 사료 등만 판매를 허용하며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고,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브리더에게 고액을 주고 분양받거나 ‘티어하임(Tierheim)'과 같은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함. 영국에서도 2018년 '루시'(강아지공장에서 구조한 번식견 이름)법을 제정하여 강아지 공장(puppy mill)에서 나온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하며,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허가받은 소규모 ‘브리더(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입야양 받도록 하고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AB-485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음.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함  |

|  |
| --- |
| ■ **'피학대' 동물 몰수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사육 제한** |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격리보호 조치 기간을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격리 보호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3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을 뿐 아니라, 이 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스스로 말을 못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에게는 보다 세밀하고 섬세한 법과 제도가 필요함.피학대 동물을 동물 학대자로부터 몰수하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함. |

|  |
| --- |
| ■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 길고양이, 유기견의 이주, 보호 대책 마련** |
| 한해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천건의 도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개발이 되고 있으나, 그 지역안의 길고양이와 유기견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임.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각종 유리파편, 쇳조각, 돌덩어리 등으로 길고양이와 유기견들에게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지역으로, 철거시에는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도망도 가지 못하고, 콘크리트 건물 잔해에 압사되거나 생매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임.하지만 조합이나 시공사, 지자체 등은 이러한 길고양이와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계 법령을 개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역 실태조사 실시, 동물 이주계획,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도록 함. |

|  |
| --- |
| ■ **119 등과 연계한 응급, 위급한 동물구조 시스템 구축** |
| 2018년 소방청에서는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인명과 관련되지 않은 동물구조 신고는 거절하고 출동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이에 동물이 맨홀뚜껑이나 하수구에 빠진 경우, 동물이 천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동물이 담벼락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동물이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등과 같이 유기동물이 아닌 응급, 위급, 긴급한 동물 등에 대한 구조가 어려워짐.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물구조 활동에 투자하는 나라는 프랑스이며, 이곳 소방대는 동물구조에 대비해 수의사를 상시 배치하고, 수의사에게 별도의 소방 계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수의사나 동물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동물구조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독일 소방센터는 별도의 동물구조 차량과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음.응급, 위급, 긴급한 동물구조를 위한 119와의 협조 체계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을 구축함. |

|  |
| --- |
| **2. 농장동물 분야** |

|  |
| --- |
| ■ **산란계(産卵鷄)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기** |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모돈 임신 스톨(Stall) 사육 등 감금틀 사육은 구조적이고 대량적인 심각한 동물학대임. 중장기적으로 대체 시설의 개발 보급과 아울러 감금틀 사육 폐기를 목표로 함.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2013년부터 돼지 임신틀(스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2017년 8월 당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2017년 전체 농장의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을 발표함. 그리고 평사형, 방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장관 교체 후 없던 일이 됨. |

|  |
| --- |
| ■ **거세(去勢), 꼬리 자르기 등 농장동물 신체절단 및 훼손 등의 단계적 금지** |
| 닭의 부리자르기, 강제 환우(換羽, 강제털갈이), 돼지의 거세, 단미, 발치, 절치(치아 절단) 등은 해당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관행적이며 구조적인 심각한 동물학대로, 개선방법을 마련하고 동물 신체를 훼손하고 절단하는 관행을 폐기하여야 함.그리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생후 7일 이내에 마취제를 수행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함. 2020-2024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종합계획에서도 동물신체 훼손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가 부족한 상황임.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8년 '브뤼셀' 선언으로 거세, 꼬리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의사의 마취제 사용으로 수의사에 의해 행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알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 등 '도태' 동물의 인도적 처리, 산채로 분쇄 금지** |
| 국내 병아리 부화장에서는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들을 산채로 분쇄기, 발효기 등에 넣어 잔인하게 죽이고 있으며, 그 숫자가 한 해 약 4,500만-5,0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음.현행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동물학대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또한 동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항에서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으며 ②항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되어 있음.도태되는 수컷 병아리를 질소(N2)가스나 이산화탄소(CO2) 가스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해서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참고로 2018년 독일에서는 계란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유기물을 추출하여 수컷, 암컷을 분별하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이를 국내 병아리부화장에서도 도입 활용할 필요가 있음.2018년 12월 경남 사천의 돼지 농장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기 돼지들을 손 망치로 머리를 여러대 가격하여 죽여서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건도 발생함. 도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
| --- |
|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실시 및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및 우선 구매제 실시** |
|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당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살충제 계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2017년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함.그리고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사시설에 대한 축종별 가이드라인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이 마저도 부진한 상황임.2018년 현재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147곳이며 이중 95곳이 산란계농장이고 돼지사육농장은 12곳에 불과하며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5%에 불과한 실정임.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동물복지 축산물은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복지축산물의 공급과 판매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계몽을 강화하고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군부대 등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솔선수범해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함. |

|  |
| --- |
| ■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생매장'(生埋葬) 살처분 방지 대책 및 예방백신의 활용** |
|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03년 첫 발생 이후 2019년까지 약 1억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되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과 소독 등 살처분에만 치중하고 있음.특히, 케이지에 가두어 기르는 산란계의 경우, 평사 사육하는 닭과 오리와 달리 90%이상이 산채로 생매장 살처분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함.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식 밀집축산을 폐기하는 등 환경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예방 백신 활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밀집사육의 개선 및 동물복지 향상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살처분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장비,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

|  |
| --- |
| ■ **인도적인 동물 '운송' 대책 마련** |
| 현행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서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와 '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 하는 경우에만 처벌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처벌 조항이 없음.동물 종별 인도적인 운송 기준안이 따로 없는 실정이며 특히 개농장에서 개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개들을 작은 운송용 철창 케이지안에 4-6마리씩을 넣고 팔, 다리가 구겨진 채 온 몸을 짓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운반하고 있음. 동물들이 동시에 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의하면 '개'의 경우 개체의 체장과 체폭을 곱한 넓이의 1.4배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음. |

|  |
| --- |
| ■ **도축장 내 CCTV 설치 등 인도적인 '도축' 대책 마련** |
| 2009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국의 23개 도축장 실태조사에서 전기 기절시킨 돼지 7,089마리 가운데 12.3%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목이 잘리거나 껍질이 벗겨지거나 끓는 물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매년 동물 도축장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하도록 하고, 도축업자 교육 강화 및 동물복지를 강조하고 도축장 HACCP 교육 시, 동물복지 내용 포함시킴. 도축장 동물복지 전담직원제 운영하고 그 전 까지는 동물보호감시원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시 동물복지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함.도축장 동물복지 점검 체크리스트 인증기준 평가항목을 만들고, 동물 도축 세부규정 고시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고,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했듯이, 동물복지 점검 및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도축장내 CCTV를 설치함.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예를 들어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축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이 아니므로 개인 사생활 침해는 문제라는 비용보다 편익이 월등하게 큰 상황이며, 어린이집, 병원 등처럼 불필요한 학대가 발생하는 지 등 규정, 준수 점검을 위한 것으로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  |
| --- |
| ■ **말(馬) 산업에 대한 동물복지** |
| 말은 동물중 인간과 가장 소통이 가능한 반려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은 예외적인 축종으로 아무런 복지기준이 없음. 또 현재 많은 어린 경주마, 승용마들이 조기에 퇴출되어 식용, 동물사료용으로 도축되거나 렌더링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부는 경주마의 일부에 대한 소규모의 형식적인 전환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반려동물 시장과 같은 규모의 현재의 말 산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경주마 퇴역프로그램을 마련하고, 40여 종의 유해 약품이 사용된 경주마 승용마의 식용 내지 사료용으로 도살을 금지하며, 말산업에 대한 최소한도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함. |

|  |
| --- |
| ■ **비거니즘(Veganism) 채식 문화의 확산**  |
| 우리나라는 과도한 육식 사회로 인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고혈압, 당뇨, 심장,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증가와 싸게 더많이 고기를 먹으려는 욕심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에 갇혀 심각한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월드워치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교통 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13%이고 이 보다 더 많은 18%가 육류 산업에서 나오고 있음. 이러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기후변화, 기후 위기 등을 가져와 인류의 안전과 건강,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육식을 줄일 필요성과 채식의 이유와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홍보, 교육을 강화함아울러, 공공기관, 집단 기관 시설에서 주1회 채식급식 및 채식선택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며, 채식하기 좋은 사회, 채식하기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인프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비거니즘'(Veganism)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마련함.  |

|  |
| --- |
| **3. 실험동물 분야** |

|  |
| --- |
| ■ **실험동물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체시험법'의 확대 실시 등** |
| 2018년 실험에 사용된 동물이 약 372만 마리로 매년 약 7-10%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활성화 및 3R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 그리고 불필요하고 과학적 타당성이 없는 동물실험 줄이기 등을 통해 실험동물에 희생되는 동물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의 적극적인 개발 및 보급과 아울러,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대체시험의 국내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함. |

|  |
| --- |
| ■ **실험동물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물실험법의 '선진화'** |
| 현재 동물실험법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검역본부의 행정지침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어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1980년대 마련된 미국의 실험법은 물론, 유럽연합, 싱가포르, 홍콩 등에 크게 뒤떨어져서, 동물의 고통이 방치되며 불법적인 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대학의 실험동물의 공급마저도 개농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동물실험에 대해 실험시설이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험동물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 |

|  |
| --- |
| ■ **담배, 알콜 등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금지** |
| 담배, 알콜 및 기타물질(농약, 폐수 등)의 위해 등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불필요한 독성실험 등은 금지하도록 함. 또한 새로운 유해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시각적 효과를 위하거나 이미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위한 동물실험은 대체 실험 및 기존 연구 실험결과를 활용하도록 함. |

|  |
| --- |
| ■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고통 'E등급' 동물실험의****개선 및 대체** |
| 2018년 국내에서는 약 372만 마리의 동물이 동물실험에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 중 동물에게 마취제, 진통제 사용없이 외과적 수술 등을 하는 고통 E등급의 동물실험이 1/3가량에 이르고 있음.유럽연합에서는 고통 E 등급 동물실험이 평균 5 % 내외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임.동물실험의 3R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물실험에게 극단의 고통을 주는 실험은 실험의 순수성 확보라는 미명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임. 고통 E등급 실험은 개선이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  |
| --- |
| ■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함** |
| 최근에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식용' 목적의 개 농장으로부터 연구에 사용될 개들을 공급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 경우 동물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을 사용할 경우, 연구결과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시설에서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실험동물법에서는 대학 교육기관은 동물실험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동물보호법에서 등록된 실험동물 공급업체에서만 동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함. |

|  |
| --- |
|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예외조항 삭제** |
|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음.하지만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예외규정을 두어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고 있음.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여야 함. 참고로,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 해부실습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음.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적 교육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②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은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윤리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③ 학생들에 의한 동물실험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극대화된다.④ 동물실험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명체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생명존중 사상을 파괴하고 생명경시를 부추기는 등 인성교육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

|  |
| --- |
| **4. 야생동물 분야** |

|  |
| --- |
| ■ **로드킬(Road Kill), 윈도우킬(Window Kill) 방지 대책 마련** |
| 국내에서는 연간 수십만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로드킬'(Road-Kill)당하고 있음.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도로 뿐만 아니라 도심 속 주택가까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산과 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도로와 주택이 들어서며 야생동물들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이 증가하게 된 것임.특히 도로 위 야생동물의 출몰은 운전자와 동물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데, 로드킬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임. 또한 매년 수많은 새들이 유리벽에 충돌해서 죽어가고 있음. 이러한 '윈도우킬'(Window-Kill)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
| --- |
| ■ **쓸개즙 채취를 위해 곰 농장 케이지에 갇혀있는 600여 마리 '사육 곰' 대책 마련** |
| 전국에는 약 600여 마리의 반달가슴 곰들이 좁은 철창에 갇혀서 온갖 동물학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음.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고 곰들이 최소한의 동물복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츄어리'(Sanctuary) 등 대책 마련 필요함. |

|  |
| --- |
| ■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 및 영업자외 개인 판매 금지** |
| 야생동물은 천성적으로 야생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과는 전혀 다르며, 따라서 사람이 야생동물을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동물의 자연적인 본능과 야생습성을 파괴하는 것임.뿐만 아니라 상자, 케이지 등 작은 공간 안에 야생동물을 감금하여 기르는 것 자체가 현행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의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 중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과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침해하는 것임.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클릭 한번으로 야생동물들을 마치 물건이나 상품처럼 판매, 구매하는 것은 생명존중 사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 학대와 유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음.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 및 영업자외 개인 판매를 금지함. |

|  |
| --- |
| ■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유사' 동물원의 폐기** |
| 체험 동물원, 실내 동물원, 이동 동물원 등은 '유사' 동물원으로 동물들이 매우 열악한 사육환경에 놓여 있고, 이동이나 사람들의 접촉 등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심각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태임.야생동물에 대한 비뚤어진 호기심과 상업적 이익 추구가 맞물려 생겨난 '유사' 동물원의 폐기를 통한 생명존중 사상 확립과 야생동물 보호에 초점을 맞춤. |

|  |
| --- |
| ■ **잔인한 동물학대 방식으로 생산된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
| 전세계적으로 매년 모피를 위해 1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희생되고 있음. 모피를 얻기 위해 야생상태에서 불법 덫을 놓아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모피농장에서는 작은 케이지에 야생동물들을 가두고 평생 온갖 동물학대를 하고 있음.국내에서 유통되는 모피 제품들의 상당부분이 중국산이며, 중국 모피는 너구리 등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등 매우 심각한 동물학대 산업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고 있음. 세계적으로는 모피 생산, 판매를 규제 강화하고 금지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모피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동물 털로 된 옷과 모자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웨스트 할리우드는 모피판매 금지 조례를 통과시켜 동물에 대한 잔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임을 스스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이스라엘, 뉴질랜드, 인도 등에서도 모피 수입, 제작, 판매를 금지하였음.오스트리아는 2004년 전국적으로 모피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탈리아의 모든 밍크농장은 폐쇄되었으며, 네덜란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정책을 펴서 199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우사육을 금지하였으며, 친칠라 사육은 이미 1997년 금지되었음.스웨덴은 2000년부터 전국의 모든 여우농장은 폐쇄되었고 스위스는 모피 농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은 2000년의 모피동물사육 금지 법령에 의해 모피 동물사육이 완전히 금지되어 영국의 어느 곳에도 모피농장은 존재하지 않음.또한 약 2만개 모피 농장이 성업하면서 세계 2위 모피 생산국이었던 노르웨이도 모피 산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영국 등과 함께 유럽에서 14번째로 모피 생산을 금지하는 국가가 되었음. |

|  |
| --- |
| ■ **고래류 포획, 혼획, 고래고기 유통 및 사육, 공연 금지** |
| 매년 국내에서 혼획(어로 작업 중 그물에 잡힘), 좌초, 불법 포획된 고래가 1천마리가 넘고 있으며,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허가함으로써 허가 포획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사육 돌고래의 경우, 매우 협소한 생활공간(돌고래의 하루 평균 유영 거리는 80km, 인공 수조는 자연 상태보다 1,000배 이하의 공간)과 집단생활 파괴로 치사율이 대폭 증가함. 돌고래의 정상 수명은 약 25년(남방돌고래의 경우 최대 50년)이나 사육 돌고래의 생존 수명은 10년 이하(어떤 보고에서는 평균 2년)임.유럽연합 13개국에 돌고래 수족관이 없으며 호주, 칠레, 코스타리카는 해양포유류의 전시와 사육을 금지하였음. 2012년 3월 스위스 의회도 고래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음. 국내에서도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공연을 금지하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  |
| --- |
| ■ **'산천어 축제' 등 동물 학대 살상 축제의 폐지** |
| 매년 강원도 산천어 축제에서는 산천어 500~700마리를 풀장에 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데, 잘 안 잡히니까 산천어 아가미에다가 손을 쑤셔 넣어서 피가 터지기도 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고통에 이르게 하며, 미끼를 잘 물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간 굶기기도 하는데, 매년 70-80만 마리의 화천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희생됨.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금지)에서는 어류도 보호 대상의 동물로 포함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미 무수한 과학 연구들이 어류도 고통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유흥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덜 고통받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맨손잡기 등은 아이들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비교육적 프로그램이며 생명경시 사상을 부추기는 해괴한 이벤트임. 산천어 축제, 송어 축제, 연어 축제 등 동물을 오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보고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행위의 축제는 폐기되어야 함. |

|  |
| --- |
| **■ 산 낙지, 산 문어 등 살아있는 동물의 조리 및 식용의 금지** |
| 낙지, 문어, 가재, 랍스터 등 연체동물, 갑각류 등의 동물들은 신경체계가 발달하여 고통과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산채로 얼음물 등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음.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인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는 등의 조리와 식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  |
| --- |
| **5. 일반종합 분야** |

|  |
| --- |
| ■ **동물학대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
| 매년 국내에서는 끔찍하고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등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음.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강화 개정이 중요함. |

|  |
| --- |
| **■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정의에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연체동물, 두족류, 갑각류를 포함함**  |
| 현행 동물보호법 제 2조(정의)에서는 동물의 정의를 아래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문어와 낙지, 가재, 게, 랍스터 등의 연체동물, 두족류, 갑각류 등도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만큼, 불필요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
| --- |
| ■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 증강 및 '동물보호과' 등 전담 부서 설치** |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과, 축산과 등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그 나마 전담 인력이 없이 1명의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임.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동물보호감시원은 전국에 375명으로, 각 지자체마다 1~2명의 담당자가 동물보호 업무 뿐 아니라 가축 방역, 살처분 보상 등 업무까지 맡고 있는 데, 동물보호 인력을 보강해야 함.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참고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동물보호과'를 이미 설치하고 많은 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음. |

|  |
| --- |
| ■ **초, 중, 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동물보호 교육 실시** |
| 동물학대 사건이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동물학대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교육 과정에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필요함. 예방과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어려움. 초, 중, 고교 정규 교육과정 및 대학에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정규 교과목 선택 및 정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 의식 향상 및 정서 순화에 이바지함. |

|  |
| --- |
| ■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 및 '동물권' 명시** |
| 유럽연합 헌법 제121조에서는 동물은 감각과 지각이 있는 존재이므로 EU와 회원국은 농어업, 운송, 시장,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동물복지 요구조건을 전면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독일은 2002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헌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고 동물권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동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  |
| --- |
| ■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장** |
| 현행 민법 98조에서는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며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 물건 이외 제3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여야 함.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됨을 천명함. |

|  |
| --- |
| ■ **산불 등 '재난' 동물 구조 가이드라인 신설 및 시스템 구축** |
|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수많은 소, 돼지, 닭, 개 등이 묶이거나 가두어진 채 불에 타서 죽음. 또한 피난민 대피소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이 발생하였음.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발생 시 동물을 구조하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보호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신설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
| --- |
| ■ **푸아그라, 샥스핀 등 잔인한 동물학대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의 수입, 판매 제한** |
| 프랑스 어로 '살찐 간'을 뜻하는 '푸아그라'(foie gras)는 거위나 오리의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부리에 튜브를 끼우고 사료를 억지로 먹여서 몸무게가 자연 상태의 4배에 이르도록 키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짐. 이러한 잔인한 방식으로 인하여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시작해,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푸아그라 생산,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 추세임.연간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샥스핀'(상어 지느러미)때문에 산 채로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닷속에 버려져 헤엄을 못치고 천천히 과다출혈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음. 유럽연합과 미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은 샥스핀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2016년 국내에서도 샥스핀을 판매하던 서울의 5성급 호텔 12곳 가운데 3곳(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앰버서더, 메이필드호텔)은 판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음. 푸아그라, 샥스핀, 루왁커피 등 불필요한 동물학대를 거쳐 생산된 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제한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김해똥강아지공화국, 나주천사의집, 김해유기동물협회(더공존),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독수리하우스아이들, 돌프와친구들, 동물권단체케어, 동물권SNS,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모임(동지모),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에게자비를, 롯데캐슬냥이들,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보호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사단법인고유거,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성남캣맘활동가, 쉬어가개냥, 스토미드림Co,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애니멀파라다이스,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엔젤독스밴드, 예술행동그룹SKAVANTGARD(스카방가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전국동물지킴이, 캣치독, 1500만반려인연대, 포항동물사랑,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가나다순)**

(주소: 서울 마포구 고산 16길 49-4, 302호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전화번호: 010-3324-6477 이메일주소: LWB22028@daum.net)